

# 「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년 8월 26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4년 9월 5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4년 9월 5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산림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산림수도위원회의 안전 발생 빈도가 적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하여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여 성별 균형 참여를 실현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산림수도위원회 운영 비상설 전환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비율 규정(안 제20조)

-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효력이 없어지는 규정 삭제(안 제21조, 제23조, 제24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.....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
2.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 「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
- 제안일자 : 2024. 8. 26.
- 회부일자 : 2024. 9. 5.
- 상정일자 : 2024. 9. 5.

### 2. 제안이유

- 산림수도위원회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하여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여 성별 균형 참여를 실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산림수도위원회 운영 비상설 전환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비율 규정(안 제20조)
-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효력이 없어지는 규정 삭제(안 제21조, 제23조, 제24조)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에서는 지자체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심의회, 위원회 등)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정부는 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」을 통해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자체 위원회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고 있음.

[표] 위원회 정비 방안

< 기본 방향 >

정비 대상		정비 방안
법령상 임의위원회 / 조례상 위원회	신설 위원회	신설 최대한 억제
	미개최 위원회	· 3년간 미개최 ⇒ 폐지 · 1년간 미개최 ⇒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
	비효율 위원회	· 기능 유사·중복 ⇒ 통·폐합 · 기능 독립 ⇒ (목적달성) 폐지 (한시필요) 존속기한 설정 (내부안건) 협의체 전환 (존속필요·안건少) 비상설화
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(행안부→해당부처, 법령정비 요청)	· 미개최 · 비효율	⇒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(행자부→해당부처, 법령정비 요청)

## 나. 입법의 취지

-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평창군 산림수도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20조(산림수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) 제2항에서 위원회는 안전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, 제7항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우리 군 산림수도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체적인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.

#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8. 26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
- 나. 산림수도위원회의 안전 발생 빈도가 적어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
- 다.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여 성별 균형 참여 실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개최 빈도가 적은 산림수도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,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비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책결정에 대한 양성평등을 실현(안 제20조)
- 나.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효력이 없어지는 규정 삭제(안 제21조, 제23조, 제24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4. 5. 10. ~ 2024. 5. 2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 - 평창군 공고 제2024-723호, 산림과-7878(2024. 5. 8.)호
- 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 [기획실-6578(2024. 4. 24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실-6578(2024. 4. 24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반영[가족복지과-14740(2024. 4. 23.)호]
  -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선
- 5) 법제심사 : 적정[기획실-9126(2024. 6. 13.)호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실-9554(2024. 6. 24.)호]

##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심의하기 위하여”를 “심의하고자 할 경우”로, “둔다”를 “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

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23조제1항을 삭제한다.

제24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산림수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산림수도 육성에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<u>심의하기 위하여</u> 산림수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<u>둔다</u>.</p> <p>② <u>위원회</u>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<p>⑦ 위촉직 위원은 산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<u>군수가 위촉한다</u> &lt;후단 신설&gt;</p> <p>⑧·⑨ (생략)</p> <p>제21조(임기) ① <u>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</u>.</p> <p>② <u>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</u>.</p>	<p>제20조(산림수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<u>심의하고자 할 경우</u> ----- ----- <u>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</u>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 ----- ----- <u>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</u>.</p> <p>⑧·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1조(임기) 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

제23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24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에 해당하거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2.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

제23조(회의) <삭제>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위원의 해촉) <삭제>

# 관계법령 발취

## 양성평등기본법

[시행 2021. 10. 21.]

**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국가 및 시·도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실무위원회
2. 시·군·구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시·도위원회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## 1. 비용발생 요인

○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○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안전국 산림과장 이 성 모
연락처	(033) 330 - 2450